

「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위

-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6. 09. 09(금) 평창군수(문화관광과장)
- 회부일자 : 2016. 09. 20(화)
- 상정일자 : 2016. 09. 20(화) 제222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문화관광과장 남동선)

- 법제처의 조례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관련조례 일제정비 권고에 따라 작은도서관 시설 기준 및 등록 취소 기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류지웅)

-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규제개선 관련 조례 일제정비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주요 내용을 보면
 - 안 제4조에서는 작은도서관 시설 기준 완화
 -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작은도서관 등록 및 폐관, 등록 취소 기준 등을 각각 완화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음.

○ 검토 결과

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시설 기준 및 등록 취소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(설치 기준 및 조건)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(설치 기준 등) ①작은도서관은 「도서관법 시행령」 제3조 별표 1중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,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③작은도서관은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. 다만,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5조(등록 및 폐관)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(등록 및 폐관) ①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「도서관법」 제31조에 따라 제4조의 설치 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군수에게 등록신청 할 수 있으며, 군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다만, 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설치 기준을 갖추면 등록한 것으로 본다.

②제1항에 따라 작은도서관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폐관하려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작은도서관 변경등록신고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작은도서관 폐관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등록의 취소 등)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(등록의 취소 등) ①군수는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「도서관법」 제31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, 운영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운영자는 군수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.

제20조(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·운영)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(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·운영)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다만,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